

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998년 3월
제74회 임시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3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
및 제안자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3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서구의회(임시회) 회기중

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8년 3월 25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< 제안설명자 : 지방세과장 정광량 >

가. 제안사유

- 현재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의 세목, 과세객체, 과세표준, 세율등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체계적·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, 현행 조례를 개선·보완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목적 조항 신설(안 제1조)
-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6조)
-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항 개정(안 제12조)
 - 3개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
-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조항 삭제
-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 삭제
- 구판사업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비율 조정(안 제29조 및 제39조)
 -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
- 공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43조)
 - 공람 :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공람하여야 한다.
 - 이의신청 :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면허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< 전문위원 박종근 >

-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전체적 개정에 따라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등 전면적인 개정에 의한 것으로

-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장의 제정과 교부, 수정신고제도,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, 기한연장 조항을 신설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판단되며
- 구세인 면허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, 세율, 세액조정, 열람 및 이의신청 규정을 체계적,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이며,
- 해당부서에서는 신설 변경된 세법을 전직원이 숙지하여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민의 권익과 공평과세 차원에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임.

첨부 : 주요개정내용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8년 3월 25일

발 의 자 : 김상집의원의외 8인

1. 수정사유

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위원회에서 심사함에 있어 공정
을 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○ 위원의 심의 참석 제한 사유

-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- 위원장의 동의를 있는 경우
- 당해 과세대상에 대한 감정 참여 위원

○ 회의록에 관한 사항

- 개최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 성명, 심의사항, 진행사항
- 위원발언요지, 심의결과, 기타 중요사항

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8조제③항 다음에 제④항제⑤항을 신설하고 제④항내지 제⑥항을 제⑥항내지 제⑧항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1.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2.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
3. 당해 과세에 대해 감정을 한사람 또는 법인

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

1.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3. 심의사항
4. 진행사항
5. 위원발언요지
6. 심의결과
7. 기타 중요사항

